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㉾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삼구빌딩 7, 8층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87/전송(02)790-8911
보험국장 이성민 [6574] 보험급여팀장 김선우 [6576] 팀원 이보근 [6587]/E-mail: kma6571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813-06783호

시행일자 2021. 09. 03.

수 신 16개 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전문학회장),
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

참 조

제 목 [발송]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-220호 (2021.09.01.)

3. 위와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개정공고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-220호, 2021. 09. 01. 시행)한 바,

4. 이에 동 공고 사항을 붙임의 내용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를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주요 개정내용

□ 항암요법 급여기준

○ 신설(1항목)

- 신장암에 'nivolumab + ipilimumab' 병용요법(1차) 신설
  ·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  · 항구토제 [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] 목록 추가
- 두경부암에 'nivolumab' 단독요법(2차 이상) 신설
- 호지킨림프종에 'nivolumab' 단독요법(3차 이상) 신설

○ 변경(1항목)

– 유방암에 ‘ribociclib + letrozole’, ‘ribociclib + anastrozole’ 병용요법 투여 대상 변경 (세부 조건 추가)

나. 시행일 : 2021. 9. 1.부터

붙임 : 공고 전문 1부 및 주요 개정내역 각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